

2003. 11. 24(월) 10:00  
제104회 임시회 산건위 제1차회의

# 조 례 검 토 보 고

거창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..... 1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[ 거창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 ]

검 토 보 고

## 1. 검토경과

### 가. 제출일자

- 제 출 일 : 2003. 11. 11.
- 제 출 자 : 거창군수

### 나. 회부일자 : 2003. 11. 14.

### 다. 의안번호 : 제 2003 - 55호

## 2.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

### 가. 제정이유

-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사업지원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  
(안 제1조 및 제2조)
-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토록 함. (안 제3조)
- 읍·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·운영토록 하고 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 및 신

- 청대상자에 대한 지원여부 등을 심의토록 함. (안 제4조 및 제5조)
- 읍·면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토록 함. (안 제6조)
  - 군수는 사업계획수립시 및 지원사업계획 확정시 해당 읍·면장에게 통보하고, 읍·면장은 해당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. (안 제7조)

### 3. 검토의견

-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형식과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.

### 4. 참 고

-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제23조 및 시행령 제24조 제3항 (2002. 1. 14 공포)
- 경상남도 수질 67400-11357( 2003. 7. 5)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조례 (표준안)

## (조례 관련 참고사항)

### □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 (환경녹지과)

- 관련법규 :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
- 대상지역 : 댐의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5km 이내
- 지원사업의 종류
  - 소득증대사업(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설치, 유기영농의 지원)
  - 수도시설의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
  -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
- 지원액 : 14억원(2003년도)

### □ 합천댐 정비사업(건설과)

- 관련법규 :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
- 대상지역 : 댐의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5km 이내
- 연도별, 읍·면별 지원계획

읍 면	사업건수	사 업 비 (백만원)					
		계	2003	2004	2005	2006	2007
합 계	140	11,609	866	2,792	2,848	2,418	2,685
거 창	16	3430	214	819	812	806	779
남 상	55	3316	457	648	730	713	768
남 하	44	3160	80	840	890	608	742
신 원	21	985	50	285	216	206	228
가 조	4	718	65	200	200	85	168